



대한치의학회

수 신 : 각 분과학회장

참 조 : 각 분과학회 총무·재무이사

제 목 : 분과학회 연회비 납부 협조 요청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 회칙 제7조(회원의 의무)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입회비,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불임과 같이 연회비를 안내하오니 각 학회에서는 해당 연회비를 **2017년 6월 19일(월)**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금 후,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서류가 없을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필요)**을 본 학회 이메일(scientific@cho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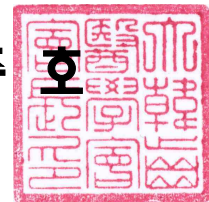
= 아 래 =

○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146-890053-92304(예금주: 대한치의학회)

불임 : 1) 각 학회별 회원 수 및 연회비 현황 1부.

2)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대한치의학회 회장 이 중 호



수신자 :

대 리 손우영

과 장 홍석민

국 장 최종환

협조자

시 행 치의학17-5

(2017.05.17)

접 수

()

우 0480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 <http://www.kadents.or.kr>
전화 (02)2024-9150 / 전송 (02)468-4656 / scientific@chol.com / 공개

32개 분과학회 회원 수 및 연회비 산정내역

2016년 12월 31일 기준

연회비 책정기준	회원 수	회비 금액
	300명 미만	700,000원
	300명 이상 ~ 1,000명 미만	1,000,000원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1,500,000원
	2,000명 이상	2,000,000원

연번	학 회 명	회원 수(명)	해당 연회비(원)
1	대한치과교정학회	3,242	2,000,000
2	대한치과보존학회	1,941	1,500,000
3	대한영상치의학회	396	1,000,000
4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1,991	1,500,000
5	대한소아치과학회	983	1,000,000
6	대한치과보철학회	4,171	2,000,000
7	대한치주과학회	2,132	2,000,000
8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652	1,000,000
9	대한구강해부학회	250	700,000
10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1,994	1,500,000
11	대한치과의사학회	64	700,000
12	대한군진치의학회	282	700,000
13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289	700,000
14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240	700,000
15	대한치과재료학회	506	1,000,000
16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581	1,000,000
17	대한구강생물학회	240	700,000
18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2,188	2,000,000
19	대한턱관절교합학회	865	1,000,000
20	대한구순구개열학회	407	1,000,000
21	대한치과마취과학회	811	1,000,000
22	대한스포츠치의학회	356	1,000,000
23	대한노년치의학회	642	1,000,000
24	대한악안면레이저치의학회	210	700,000
25	대한장애인치과학회	311	1,000,000
26	대한심미치과학회	3,322	2,000,000
27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396	1,000,000
28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5,845	2,000,000
29	대한디지털치의학회	216	700,000
30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738	1,000,000
31	대한치과보험학회	360	1,000,000
32	대한통합치과학회	438	1,000,000
총 금액			37,100,000

대한치의학회

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번호

146-890053-92304 구) 외 환: 630-00966693-1

과목

기업자유

기업자유예금

이감



KEB하나은행

등장발행일 2016년 09월 23일

통장발행전 (1402)성수역

계좌개설일 2015년 03월 02일

검인 계좌개설전 (1146)화양동

개설전 02)463-2913

인감의 사용 등 어느 하나로 자동인감이 가능합니다.

서명으로 인출시 본인확인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KEB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통장은 수신거래 기본약관 및 해당상품별

약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특
이
사
항

#001 이월재발행

인감사용